

2023년 제1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2023.12.29



여수시 규칙 제833호

붙임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 1부

##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를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이상 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7조제2항 중 “7급이상 공무원”을 “공무원”로 한다.

[별표 1] 제목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관련하여 구분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계량화) 평가항목(예시) 중 “기술인력 보유상태”를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으로 변경하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삽입한다. 비고란 “사업담당자가 평가”를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로 변경하고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으로 변경한다.

“주1) ~ 주3)”을 “주1)~주5)”로 변경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u>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u></p> <p>⑤ (생 략)</p> <p>제3조(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u>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u></p> <p>2. (생 략)</p> <p>3. <u>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u></p>	<p>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p> <p>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이상 공무원</p> <p>2. (현행과 같음)</p> <p>3.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u></p>

<p>4. ~ 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 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 회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7조(간사) ① (생 략)</p> <p>② -----7급이상 공무원-----</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무원</u>-----</p>

[별표1]

현행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경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상태</li> <li>■ 기술인력 보유상태</li> <li>■ 신인도</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li> </ul>	100							
기술 능력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정성적 평가분야</td> <td style="width: 30%;">용역 분야</td> <td style="width: 40%;">평가기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 협력 관계</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평가분야</li> <li>■ 용역 물품</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자 평가</li> <li>■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td> </tr> </table>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분야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 협력 관계</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평가분야</li> <li>■ 용역 물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자 평가</li> <li>■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20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분야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 협력 관계</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평가분야</li> <li>■ 용역 물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자 평가</li> <li>■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기적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정성적 평가분야</td> <td style="width: 30%;">용역 물품</td> <td style="width: 40%;">평가기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월기적</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x (최저일월기적 / 최장기적) * 80퍼센트 상당기적 + [2 * (주)의 60퍼센트 상당기적] * 1.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li> </ul> </td> </tr> </table>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물품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월기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x (최저일월기적 / 최장기적) * 80퍼센트 상당기적 + [2 * (주)의 60퍼센트 상당기적] * 1.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li> </ul>	20	* 평점산식 : 아래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물품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월기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x (최저일월기적 / 최장기적) * 80퍼센트 상당기적 + [2 * (주)의 60퍼센트 상당기적] * 1.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80점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li> </ul>							

주1) 일월기적 평점산식

- ①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2 \* (주)의 60퍼센트 상당기적] \* 1.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1. 일월기적이 주장기적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예정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을 작성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평점 = 일월기적(주)의 87.7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산식으로 평가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주5) 예정(주)기적의 87.7퍼센트 미만인 자의 일월기적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주1) 평점지침 평가기준에는 해당 세부기준들이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이 등의 차지를 고려하여 체계화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일월기적 평점산식
  - ① 일월기적이 예정기적(예정기적을 작성하는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x (최저일월기적 / 최장기적)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2 \* (예정기적의 80% 산정기적 - 예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1. 최저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평점지침 평가기준에는 예정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일월기적(주)의 80퍼센트 상당기적 - 상당기적의 80% 산정기적 \* 1. 일월기적은 유료한 일월기적으로 하되, 일월기적의 80% 산정기적의 80% 상당기적] \* 2. 예정기적(주)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판례법' 제2조 1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4. 평점 = 일월기적(주)의 87.7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산식으로 평가한다.
  5.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주5) 예정(주)기적의 87.7퍼센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설명은 평가 항목을 완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설명을 평가 할 수 있다.